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도시계획과-23818
등록일자	2015.11.19.
결재일자	2015.11.1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광고물정비팀장	도시계획과장	도시환경국장		
이준복	최범진	이수진	전결 11/19 배경섭		
협조자	행정국장 재무과장 계약팀장	이창훈 김병희 엄선희			

-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명품도시! 강남 -

2016년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업체 선정계획

- 용역기간 : 2016. 1. 1 ~ 2016. 12. 31
- 용역대상 :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(강남구 전역)
- 소요예산 : 224,057천원
- 업체선정방법 : 제한경쟁입찰(용역)
- 용역업무 범위추진기간 : 2016. 01. 01 ~ 2016. 12. 31
 - 구청의 지휘 하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
 - 구역별 예방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 사전 설치 예방
 - 365일 주간, 새벽, 야간 상시근무 및 휴일근무
 - 수거한 불법광고물 운반 및 적치, 과태료 부과 의뢰 등

2015. 11. .

강 남 구
(도 시 계 획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자치부예규제3호, 2014.12.19) •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(2014.03.20) •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경위 : 365일정비체제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강남구 전역 •수혜자 : 강남구 주민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○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○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<p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- 서초구외 5개구는 휴일 용역계약 체결 시행
전문가분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남구(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) 아웃소싱 업무평가결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업무로 평가됨

2016년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업체 선정계획

불법광고물의 365일 상시 단속 및 정비체제를 유지,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1 개요

■ 용역기간 : 2016. 1. 1 ~ 2016. 12. 31

(지방재정법 개정·시행 (2014.11.29)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말로 적용)

■ 용역대상 :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(강남구 전지역)

■ 소요예산

구 분	인 력	소 요 예 산		예 산 과 목
		계	내 역	
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	6명	224,057	인건비 : 151,611 제경비 : 24,743 관리비 및 이윤 : 27,334 부가가치세 : 20,369	도시개발, 쾌적한도시환경조성,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이전,민간위탁금,

■ 용역업무 범위

- 구청의 지휘 하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
- 구역별 예방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 사전 설치 예방
- 365일 주간, 새벽, 야간 상시근무 및 휴일근무
- 수거한 불법광고물 운반 및 적치, 과태료 부과 의뢰 등

2 업체선정 방법

■ 입찰자격

- 용역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경비업(업종코드:1164) 또는 특수 경비업(업종코드:1168)으로 입찰참가 등록업체
- 중소기업청고시 "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"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서(경쟁물품명:경비업(시설물경비서비스)92121599)을 소지한 업체
(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)
단,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경비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 증명서 제출 제외
-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(입찰의 참가자격)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
-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에 등록된 업체

■ 계약방법

- 계약방법 : 제한공개경쟁 입찰(용역)
- 계약근거
-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(물품의 제조·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)

■ 용역사업자 선정 : 입찰계약 시행(재무과)

3 세부 추진일정

- 2015. 11. 17 :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업체 선정계획 방침수립
- 2015. 11. 19 : 용역계약 심사 요청 (재무과)
- 2015. 11. 23 :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용역 일상감사 요청 (감사담당관)
- 2015. 11. 25 :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계약 입찰의뢰 등 (재무과)
- 2015. 12월 중 : 업체 계약

- 붙임 : 1) 과업지시서
2) 용역원가 산출내역서
3) 불법광고물정비 계약특수조건. 끝.